

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
(관세청 고시 제2022-65호, 2022.12.30.)

2. 개정 사유

-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에 등록이행 사전 안내 규정 마련을 통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방지
- 준용 법령 근거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① 등록시기 명확화(제3조)

-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다음해 3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등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

② 등록 의무 대상 사전 안내 규정 신설(제3조의2)

-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에게 등록이행 하도록 사전 안내 규정 신설
- 구매대행업자 등록 사전 안내 서식 신설(별지 제4호 서식)

③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준용 법령 명시(제7조제3항)

-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준용 법령 및 조문 인용으로 위임 근거 마련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준용)

법령위임근거 조항	조문내용
○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항	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불필요한 조문 정리(제4조제1항, 제8조제3항)

- 포괄적인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 조문 삭제

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"별 첨"

5. 시행 일자 : 2024. 7. 1.